[2020년 법원등기사무직 공채 민법과목 해설과 강평]

KG에듀원 홍 성 철 교수

<종 합 강 평>

1. 난이도

2020년 2월 22일(토)에 시행된 법원등기사무직 공채시험에서 민법과목은 비교적 무난한 출제로 보인다. 2019년 합격자 평균(80점)보다 8점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1단계 교재에서 24문제(96%)의 적중률을 보였다. 나머지 1문제도 홍민법 신정판 교재와 최신민사판례(2018년간)에 수록된 내용이다.
아래 기출문제 해설에서 출처와 쪽수를 명기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문제 번호	상(3)	중(15)	하(7)
1	O		
2		O	
3		O	
4		O	
5		O	
6		O	
7		O	
8		O	
9		O	
10		O	
11	O		
12			O
13			O
14		O	
15	O		
16			O
17		O	
18		O	
19		O	
20		O	
21			O
22			O
23			O
24		O	
25			O

2. 각 편별의 출제비중

번호	총칙(7)	물권(5)	채총(5)	채각(5)	친족(3)	상속(0)
1						O
2		O				
3	O					
4		O				
5				O		
6			O			
7		O				
8						O
9			O			
10		O				
11			O			
12					O	
13		O				
14	O					
15	O					
16				O		
17		O				
18				O		
19	O					
20				O		
21	O					
22	O					
23	O					
24		O				
25		O				

구분	단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100%
총칙	통칙							1				1	
	인	1		1								2	
	법인	1	1	1	1				1	1	1	7	
	물건											0	
	법률행위	3	2	3	3	2	4	4	3	2	3	29	
	기간		1							1		2	
	소멸시효		1		1	1	1		2	3	3	12	
	소계	5	5	5	5	3	5	5	6	7	7	53	21.2%
물권	총칙	3	1		1	2	1	3	2	2	1	16	
	점유권	2	1				1	1		1	1	7	
	소유권	1		3	1	1	2	1	2	3	1	15	
	용익물권		1	1	1	1	1	1		1		7	
	담보물권		3		2	2	1	2	1	1	2	14	
	소계	6	6	4	5	6	6	8	5	8	5	59	23.6%
채권	목적	1									1	2	

총론	효력	1	2	1	3	1	1	4	2	1	2	18	
	다수당사자	1		2	1	1						5	
	양도、인수	1	1	1		2	1	1	1		1	9	
	소멸	1	2	2	1	1	2	1	2	2	1	15	
	소계	5	5	6	5	5	4	6	5	3	5	49	19.6%
채권 각론	계약총칙	1		2	2	1	1	1	1	1	1	11	
	재산권이전	1	2	1		2		1		2		9	
	물건이용	1	1	1	1	1	1			1	1	8	
	노무이용				1				1		1	3	
	기타전형					1						1	
	사무관리	1			1						1	3	
	부당이득	1	1			1	1	1	1			6	
	불법행위			1	1	2	1	1	2		1	9	
	소계	5	4	5	6	8	4	4	5	4	4	50	20.0%
친족	총칙											0	
	혼인	2		2	2	1	2	1	1	1	1	13	
	부모와자		2	2			1				1	6	
	친권과후견				1		1				1	3	
	부양								1			1	
	소계	2	2	4	3	1	4	1	2	1	3	23	9.2%
상속	재산상속	2	2			1	1		2	1		9	
	유언		1	1	1		1			1		5	
	유류분					1		1				2	
	소계	2	3	1	1	2	2	1	2	2	0	16	6.4%
총계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0	100.0%

3. 판례와 조문의 출제 비중

전체 113개 지문 중 판례지문이 97개(86%), 순수조문지문이 16개(14%) 출제되어 판례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었다.

4. 문제유형별 고찰

(1) 옳지 않은 것은? : 19문제
(2) 옳은 것은? : 6문제

5. 특이점

(1) 전형적인 박스형 3문제(1번, 3번, 21번)와 변형된 박스형 문제 1문제(25번)가 출제되었다.
① 박스형(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번 문제
② 박스형(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번, 21번 문제
③ 박스형(빈칸에 들어갈 말을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25번 문제

(2)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에서 기출되지 않은 판례는 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7개 지문 중 91개가 기출

문제에서 출제되었다.

기출되지 않은 판례들은 거의(5개) 최신 판례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습방향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되 최신 판례 중 중요한 것들을 별도로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와 정답 및 해설>

[2020년 법원서기보 공채시험 문제와 해설]

* 순서는 1형으로 하되 2형은 () 안에 번호를 붙임

1(3).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ㄴ. 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는 물론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이 점유하여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丙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乙이 丙의 취득시효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乙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ㄹ. 甲과 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X토지 중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甲이 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을 丁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X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丙은 자신이 점유한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해서는 소유 명의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그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ㅁ. 甲 소유의 X토지를 점유하던 乙이 甲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甲이 이에 응소하여 乙의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乙의 주장 사실을 부인한 결과 乙이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응소행위로 인해 乙의 점유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ㅂ.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① ㄱ, ㄷ, ㅂ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ㅁ　④ ㄷ, ㅁ, ㅂ

정답 ①(난이도 상)

ㄱ. (O)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O). [2019년 법원주사보] → 민법 제245조 제1항. → 192쪽 1.
ㄴ. (X) 乙은 甲 명의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乙이 甲에 대한 등

기청구권을 취득하였지만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丁은 甲에 대하여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乙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O). [2013년 법무사, 2007、2012、2017년 법원행시, 2019년 법원주사보] →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점유의 승계주장, 하자 승계o, 법률효과 승계X]** → 203쪽 1.

ㄷ. (O)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나 본등기를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O). [2016년 법무사, 2019년 법원행시] →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21258 판결.**[완성 전 가등기, 완성 후 본등기, 보호되는 제3자O]** → 204쪽 7.

ㄹ. (X) 甲과 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X토지 중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甲이 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을 丁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X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丙은 자신이 점유한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해서는 소유 명의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그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X). [2012・2019년 법원행시]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44753 판결)**[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이해관계 있는 제3자O, 고정시설O]** → 200쪽 2.

ㅁ. (X) 甲 소유의 X토지를 점유하던 乙이 甲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甲이 이에 응소하여 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하면서 乙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한 결과 乙이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응소행위로 인해 乙의 점유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X). [2019년 법원행시] →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점유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제기, 소유자 응소, 점유자**

패소, 시효중단X] → 197쪽 12.
ㅂ. (O)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O). [2019년 법원주사보] → 대법원 1995.07.11 선고 94다4509 판결).**[등기의무자의 악의 처분, 채무불이행X, 불법행위O]** → 205쪽 4.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해제와 해제조건의 성취는 서로 법적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같다.
② 계약의 합의해제의 효과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원칙적으로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계약의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 보호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된다.
④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무불이행은 주된 채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답 ①(난이도 중)

① (X) 해제원인이 발생하더라도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고, 해제의 효과는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법 제548, 550조). 그러나 해제조건이 성취되면(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기로 하는 취지의 부관이며, 그 성취의 효과도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법 제147조 제3항). → 홍민법 신정판 995쪽 ②
② (O) 해제권자는 해제권을 행사하여 해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u>합의해제</u>를 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거나 추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등의 <u>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u>.(O) [2014、2018년 법무사, 2014년 법원행시, 2016년 법원서기보] →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판결).**[합의해제、해지, 채불청X]** 그리고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8755 판결). → 444쪽 6.
③ (O)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그 해제 전의 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O). [2015년 법무사]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상속재산분할, 합의해제O, 제3자 보호O]** → 444쪽 5.
④ (O)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u>부수적 채</u>

무의 불이행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O). [2011、2016년 법무사, 2014년 법원사무관, 2015년 법원행시, 2011년 법원서기보] →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부수채무불이행, 해제X]** → 435쪽 14.

3(1). 아래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甲은 2002. 2. 1.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甲은 법정대리인 A의 동의없이 L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甲은 乙이 운영하는 노트북 대리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를 3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이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한편 甲은 당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후 甲은 A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L사와의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乙과의 위 신용구매계약을 각각 취소하였다.

<설명>
ㄱ. 甲이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ㄴ. 甲과 乙과의 신용구매계약은 A의 묵시적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ㄷ. 만일 甲과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L사가 乙에게 甲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한 경우, L사는 여전히 甲에게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만일 甲과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L사가 乙에게 甲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한 경우, L사는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ㅁ. 위 ㄹ.의 경우, 甲이 반환하여야 할 이익은 乙로부터 구입한 재화, 즉 외장하드이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ㄷ, ㅁ

정답 ①(난이도 중)

ㄱ. (X)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O) [2010년 법원사무관, 2018년 법원행시, 2009.2015·2019년 법원서기보]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강행법규 미성년자 위반 금반언X]** → 마무리 1단계 9쪽 11.
ㄴ. (O) 만 18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위무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O) [2011년 법무사, 2016년 법원행시, 2013년 법원주사보] →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 판결.**[미성년자 월 소득범위 내 신용구매계약, 취소X]** → 마무리 1단계 17쪽 1.
ㄷ. (X) ㄹ. (O)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O) [2018년 법원행시] →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판결).**[미성년자, 신용카드계약 취소, 현존이익 상환O]** → 100쪽 4.
ㅁ. (X) 위 3의 경우,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은 미성년자가 가맹점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물품과 제공받은 용역이다.(X) [2019년 법무사, 2018년 법원행시] →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판결)**[신용카드계약 취소, 회원의 이익, 금전상의 이득, 현존 추정O]** → 100쪽 5.

4(2).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혼 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③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을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발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④(난이도 중)

① (O)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X). [2017년 법무사, 2015、2016년 법원행시, 2016・2019년 법원서기보]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7936 판결).**[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사해X]** → 337쪽 21.

② (O)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O).**[이혼의사, 법률혼 해소의 의사O]** [2009년 법원사무관] → 남편이 장인에게 고용되어 일하였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처의 부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오인한 후, 장인을 상대로 그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처와 상의하여 협의이혼한 경우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은 유효이다. → 홍민법 신정판 1292쪽 판례정리.

③ (O)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나,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X). [2009년 법무사, 2008년 법원사무관, 2015년 법원행시, 2015년 법원주사보, 2016년 법원서기보] → 부부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래의 퇴직금 중 혼인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대한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기존의 판례는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판결).>라고 하였으나 변경되었다.**[장래 퇴직금, 분할대상O]** → 566쪽 12.

④ (X)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X). [2019년 법원사무관]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추가로 발견된 재산, 제척기간 경과, 소멸O]** → 570쪽 29.

5(7).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담보권이 소멸하면 등기된 지상권의 목적이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지상권도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
③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④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기본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정답 ①(난이도 중)

① (X)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기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가액배상의 산정, 사실심 변종기 기준O]**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O). [2019년 법원행시, 2014년 법원사무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가액배상 산정, 실제 수수한 대가X]** → 342쪽 10. /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019년 법원행시, 2013년 법원사무관, 2015·2019년 법원서기보] →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모두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수 개의 저당권, 사해 후 일부 말소, 모두를 공제O]** → 342쪽 12.
② (O)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

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등기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까지 유지되고, 담보권과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X). [2017년 법무사, 2014.2015ㆍ2016년 법원서기보] →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11.04.14. 선고 2011다6342 판결).**[담보목적의 지상권,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부종하여 소멸O]** → 241쪽 3

③ (O)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의 현재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임을 이유로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X). [2019년 법무사]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등에 근저당권의 현재의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5016 판결).**[근저당권 원인무효, 양수인 상대로 말소청구O, 근저당권 이전무효임을 이유로 말소청구X]** → 143쪽 4.

④ (O)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기본적 거래계약에서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X). [2018년 법무사, 2019년 법원사무관, 2017년 법원행시] →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존속기간 약정X, 언제든지 해지O]** → 279쪽 21.

6(8).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②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서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소정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

과는 상실된다. 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로부터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보증채무 역시 소멸된다. 그러나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되어 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②(난이도 중)

① (X)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절대효가 있다(X). [2018년 법무사, 2012년 법원사무관, 2013년 법원서기보] → 부진정연대채무에 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부연, 승인·포기 상대효O]** → 361쪽 13.
② (O)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되어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O). [2018년 법원행시]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권리자, 피고로 응소, 소 취하, 6개월 이내 패자부활전O]** → 121쪽 7.
③ (X)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재산명시신청, 최고의 효력만O]** /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 발생한다(X). [2015년 법원행시, 2019년 법원주사보] →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지급명령, 중단시기, 신청한 때O]** → 123쪽 23.
④ (X)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X). [1998년 법무사, 2014년 법원사무관, 2015년 법원행시, 2014.2015년 법원서기보] →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보증인의 승인, 주채무X] → 369쪽 5.

7(5).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나,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③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달리,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정답 ④(난이도 중)

① (O)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통상손해로서 격락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일부 수리 불능, 교환가치 감소, 통상손해O]**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수리 후 자동차 가격 하락, 통상손해O]** → 미기출판례. 홍민법 신정판 785쪽 심화판례 26.
② (O)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O). [2015년 법원주사보]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불법행위 한 날, 손해 현실화O]** → 550쪽 10.
③ (O)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때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이 되는 채무자 부담의 채무에 포함되며, 더 나아가 비교대상 채무에 해당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 무자력, 채권자의 회수가능성X, 상당인과 인정X]** → 530쪽 4. 참고. 미기출판례.

④ (X)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O). [2013.2015년 법무사, 2010、2017년 법원행시]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간접가해자(사용자), 과실상계O]** → 313쪽 23.

8(6). 법인과 비법인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도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다.

②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란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대표자로 등기되어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은 집합체로서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더라도 그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④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종중 유사단체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④(난이도 중)

① (X)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법인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O). [2019년 법무사, 2006、2013년 법원사무관] → 대표권의

남용에 관한 비진의표유추적용설의 입장(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대표권 남용, 107조 ① 단서 유추적용설O]** → 30쪽 7.
② (X)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여기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된 자에 한한다(X). [2011、2016년 법무사, 2016년 법원사무관, 2014년 법원행시, 2014년 법원주사보]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러한 법리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실질이사, 대표기관O, 35조O]** → 26쪽 6.
③ (X)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그 사단 명의로 원고.피고가 될 수 없다(X). [2006년 법무사, 2002년 법원사무관, 2010、2016년 법원주사보] →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 → 35쪽 기본 2.
④ (O)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여 종중 유사단체를 설립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017년 법무사]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17783 판결.**[남성 만의 종중 유사단체, 103조 위반X]** → 411쪽 7.

9(12).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한 이후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④ 권리자가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난이도 중)

① (O) ④ (O)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행사에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거나 /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X). [2005、2012、2017년 법원행시, 2015년 법원서기보] → 소멸시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소멸시효 기산점, 주관적 사정X]** → 113쪽 1.

② (X)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이 경과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X). [2008년 법무사, 2017년 법원행시, 2010년 법원사무관, 2017년 법원주사보] →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확정기한 도래, 동시이행 있어도, 시효진행O]** → 427쪽 13.
③ (O)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이상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 받았는지와는 관계없이 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X). [2015년 법무사, 2005년 법원사무관, 2014년 법원행시, 2019년 법원주사보, 2016년 법원서기보] →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대법원 1976.11.0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매매 등기청구권, 인도, 소멸시효X]** → 147쪽 9.

10(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②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체에 빠지며 최고가 필요 없다.
④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이혼성립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정답 ④(난이도 중)

① (O)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O). [2019년 법원사무관, 2016년 법원행시, 2010년 법원서기보]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불확정기한O]** → 106쪽 2.
② (O)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 [2010ㆍ2011년 법무사, 2014년 법원사무관, 2016년 법원행시, 2017년 법원서기보]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불확정 사실 이행기한, 발생불능시도 도래O]** →

106쪽 2.
③ (O)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X). [2018년 법무사, 2004년 법원사무관, 2015년 법원행시, 2008년 법원주사보, 2001년 법원서기보] →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불법행위 손배, 채무성립과 동시O]** → 295쪽 14.
④ (X)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혼성립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X). [2017년 법원서기보]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청구, 확정된 다음날부터 지체O]** → 569쪽 27.

11(14).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다.
③ 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약정을 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

인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나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그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면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되었다고 하여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②(난이도 상)

① (X)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X). [2018년 법무사, 2014、2018년 법원행시] →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판결).**[673조, 과실상계X, 예정X, 손익상계O]** → 311쪽 9.
② (O)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된다(O). [2018년 법원사무관] →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있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공사가 상당 진척, 사회적 손해+도급인 이익, 해제 불소급효O]**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공사 중도 해제, 보수는 중단 당시의 기성고비율O]** → 496쪽 18.
③ (X)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일의 완성이 지연된 데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지체상금의 약정, 선급금 지체, 공제O]**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

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실제로 해제·해지한 때이다(X). [2017년 법무사, 2019년 법원사무관, 2014·2018년 법원행시, 2014년 법원서기보]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終期)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지체상금의 종기, 해제가능, 다른 업자 의뢰, 완공가능시점O]** → 495쪽 16.

④ (X) 제3채무자(공사도급인) 갑과 집행채무자(공사수급인) 을 사이에 갑의 을에 대한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대금을 을대신 납품업자인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갑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 해도 위 합의를 이유로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납품이 집행채권자 정의 신청에 의한 을의 갑에 대한 위 공사금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송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갑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전부채권자인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도급인이 수급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약정, 지급 전에도 수급인의 청구에 대항O]** → 미기출판례 / 412쪽 3. 참조.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사이에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을 지체하자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에서 노임 상당액을 공제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위 기성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O). [2018년 법원행시] →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사이에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을 지체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에서 노임 상당액을 공제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면, 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지급을 지체한 상태에서 도급인에게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적어도 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때까지는 기성공사대금 중 수급인이 지체한 노임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위 기성공사대금채권은 도급인이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도급인·수급인, 기성공사대금에서 노임 직접 지불 약정, 상계X]** → 412쪽 3.

12(9).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②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③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에는 채무자는 변제할 수 없다.

④ 채무의 성질이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제3자의 변제를 금지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정답 ③(난이도 하)

① (O)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의 제공으로 하여야 하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O). [2016년 법무사, 2011년 법원행시, 2003년 법원사무관, 2016년 법원주사보, 2013년 법원서기보] → 민법 제460조. 388쪽 1.
② (O) 대물변제(법 제466조). → 홍민법 신정판 911쪽.
③ (X)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O). [2007、2009년 법무사, 2005년 법원사무관, 2016년 법원주사보, 2009년 법원서기보] → 민법 제468조. 389쪽 7.
④ (O) 채권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는 못한다(O). [2007년 법무사, 2004년 법원행시, 2010년 법원주사보, 2010、2012년 법원서기보] → 민법 제469조 제2항. 388쪽 4.

13(10).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②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진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③ 점유자가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④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정답 ①(난이도 하)

① (O)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면 점유자의 승계인이 <u>자기의 점유만을 주장</u>하는 경우라 하여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추정된다(X). [2015년 법무사, 2019년 법원사무관, 2005、2011년 법원행시, 2007(하)년 법원서기보] →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분리주장, 자주점유 추정O]** → 200쪽 26.
② (X)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점유개시시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O). [2019년 법무사]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69 판결**[자주점유, 점유개시시를 기준O]** → 196쪽 2.
③ (X)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u>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u>하였으나 이것이 인정

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O). [2014・2019년 법무사, 2003년 법원사무관, 2018년 법원행시, 2017년 법원주사보, 2007(하)년 법원서기보]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523 판결.**[점유자, 점유권원 주장X, 자주점유 추정 번복X]** → 196쪽 9.
④ (X)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스스로 이러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O). [2007년 법무사, 2019년 법원사무관, 2006년 법원행시, 2012년 법원주사보, 2018년 법원서기보] →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615 판결.**[타주점유의 입증책임, 취득시효 부정하는 자O]** → 197쪽 1.

14(11).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도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②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③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은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③(난이도 중)

① (O)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이 사실과 다름을 시인한 이상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X). [2017년 법무사, 2012년 법원사무관, 2010년 법원행시, 2007년 법원주사보, 2019년 법원서기보]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

결),**[등기명의자가 다른 원인주장해도, 추정력O]**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다10160 판결).**[다투는 측에서 무효 입증책임O]** → 155쪽 2.

② (O)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O). [2006、2012.2014년 법원행시, 2009년 법원서기보]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등기명의인 다른 이중보존등기, 선차등기가 원인무효 아닌 한 후차등기 무효O]** → 152쪽 4.

③ (X)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X). [2018년 법원행시] →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등기는 유효하다. 이러한 경우에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경정 전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경정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위법한 경정등기, 이후 실부합, 장래에 향해서만 유효O]** → 160쪽 8.

④ (O)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1.9.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O)**[말소에 갈음하는 진명이청O]** [2009년 법원주사보] → 홍민법 신정판 382쪽 4. ①

15(18). 친생추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同棲)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부와 자녀의 유전자형이 배치되는 경우와 같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친생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나, 그렇더라도 법원이 그 잘못을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심판을 선고

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친생추정의 효력은 사라진다.
④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②(난이도 상)

① (O) 처(妻)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子)는 부(夫)의 자(子)로 추정되나, 동서(同棲)의 결여로 처(妻)가 부(夫)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O). [2003년 법원행시, 2013년 법원서기보] → 대법원 1983.7.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명백, 친생추정X]** → 575쪽 1.
② (X)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2.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지] [1]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 특히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출산, 남편 자녀 추정O]** [2]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혼인 중 남편과 혈연관계 없는 자녀 출산, 남편 자녀 추정O]** → 아내가 남편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여 원고와 혈연관계가 없는 피고들을 출산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아내와 이혼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소 각하 결론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578쪽 6.
③ (O) 친생자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친생자로서의 추정의 효력은 상실된다(O). [2016년 법원행시] → 부적법한 청구일지라도 법원이 그 잘못을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이상 이 심판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폐지) 제35조, 제32조에 의하여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심판의 확정으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외에서 친생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제는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과 충돌되는 친생자로서의 추정의 효력은 사라져

버렸다(대법원 1992.07.24. 선고 91므566 판결).**[추정받는 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 확정, 추정효 상실O]** → 576쪽 6.
④ (O) 타인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인지할 수 있다(X). [2011년 법원행시] → 제3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 다음의 판례도 확인하라.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추정받는 자, 인지X] → 576쪽 5.

16(19).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②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한다.
③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만을 말하고 간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난이도 하)

① (O)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유치권배제의 특약, 절대효O] → 최신민사판례(2018년간) 84쪽 06.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X). [2014·2017년 법원주사보]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자 2010마1544 결정). **[유치권자의 사후 포기 후의 점유계속, 무단점유X]** → 605쪽 (5)
② (O)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O). [2017년 법원행시, 2017년 법원주사보] → 민법 제320조. 258쪽 5.

③ (O)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O). [2018・2019년 법무사, 2013년 법원사무관, 2019년 법원행시, 2019년 법원주사보] →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다22050 판결.**[압류 후의 유치권 성립, 소멸주의]** → 263쪽 22.

④ (X) 유치권자의 물건에 대한 점유는 간접점유도 포함되므로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도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X). [2019년 법무사, 2012년 법원사무관, 2012、2017년 법원행시] →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직접 점유자가 채무자, 유치권X]** → 260쪽 6.

17(20). 이자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②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이는 지급의 정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의미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③ 지료나 임료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다. 또한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연이자라고도 하는데, 그 법적 성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다.

④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④(난이도 중)

① (O)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원본채권과 함께 양도된다(X). [2016년 법원행시, 2009、2013년 법원주사보] →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원본채권 양도, 변제기 도달한 이자채권, 당연히 양도X]** → 290쪽 1.

② (O)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X). [2018년 법원사무관]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정기급부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즉, 1년 미만마다 한 번씩 지급하는 정기급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1년 이내의 기간', 1년 이내 정기급여 O]** → 117쪽 1.
③ (O) 이자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 의 의미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인바, 1년 이내의 정기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위와 같은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O). [2001년 법무사, 2013ㆍ2018년 법원사무관, 2015년 법원행시, 2019년 법원서기보] → 대법원 1989.02.28. 선고 88다카214 판결.**[지연손해금채권, 정기급여X]** → 117쪽 2.
④ (X)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X). [2016ㆍ2017년 법무사, 2015년 법원사무관, 2014년 법원서기보]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인데,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8.03.14. 선고 2006다2940 판결).**금전채권 일부 변제 후 나머지 원금 시효완성, 변제로 소멸한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소멸X** → 133쪽 10.

18(1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재판상 청구하였다면 그로 인한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③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하면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④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③(난이도 중)

① (O)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O). [2015년 법무사]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배당요구, 압류에 준함O]** → 124쪽 31.
② (O)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생긴다(O). [2013년 법무사, 2017년 법원사무관, 2014년 법원행시, 2019년 법원주사보, 2018년 법원서기보]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대위, 시효중단효, 채무자에게O]** → 329쪽 8.
③ (X)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O). [2013년 법무사, 2004、2018년 법원사무관, 2006・2011년 법원행시] →대법원 2002.6.14. 선고 2002다11441 판결.**[복수의 채권, 중단효 별개O]** → 128쪽 51.
④ (O)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 중단된 후,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하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압류에 의한 중단 후 피압류채권 소멸, 집행채권의 시효 새로 진행O]** → 미기출판례 홍민법 신정판 심화판례 333쪽 21.

19(16).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나,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③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되, 다만 그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신채무자를 위하여 존속하게 된다.
④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채무자가 인수하게 된 채무와 함께 그 후 신채무자(채무인수인)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를 담보한다.

정답 ④(난이도 중)

① (O)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X). [2011년 법무사, 2019년 법원사무관, 2012년 법원행시, 2013년 법원주사보, 2010년 법원서기보] → 병존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이행의 인수를 실제상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판례는 어느 쪽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그것이 채권자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불분명한 경우, 병존인수O]** → 385쪽 12.
② (O)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한다(X). [2014·2017년 법무사, 2014년 법원사무관, 2015·2018년 법원행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중첩인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채권취득 요건O]** → 385쪽 9.
③ (O)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2015년 법원주사보, 2015년 법원서기보] → 민법 제459조. 385쪽 15.
④ (X)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X). [2018년 법무사, 2008년 법원사무관, 2014년 법원행시] →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인수, 새로운 채무 담보X]** → 278쪽 15.

20(17). 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권 상실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청구취지와 달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도록 정하는 것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
③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④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에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정답 ①(난이도 중)

① (X)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친권 상실 청구, 일부 제한 선고O]** → 미기출판례. 최신민사판례(2018년간) 232쪽 제924조 01.
② (O)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O). [2000.2013、2014년 법무사, 2002、2006년 법원주사보]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친권과 양육권, 반드시 동일인X]** → 563쪽 1.
③ (O)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재산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라도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X). [2002、2004、2012년 법원행시, 2004、2008년 법원주사보] →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법 제918조 제1항). → 582쪽 7.
④ (O)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미성년자 전부에 대하여 특별대리인 한 명만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X). [2006、2013년 법원사무관, 2012、2018년 법원행시, 2011년 법원주사보, 2012년 법원서기보] →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u>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u>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상속재산분할, 이해상반O]** → 584쪽 이해상반행위로 보는 경우 1.

21(22).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비교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訴) 제기의 방식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ㄴ. 대위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으나,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ㄷ. 채권자대위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으나, 채권자취소권은 이와 같은 특정물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④ ㄴ, ㄹ

정답 ②(난이도 하)

ㄱ. (O)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재판 외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X). [2002년 법무사, 2016년 법원사무관, 2013년 법원행시, 2014년 법원주사보, 1999년 법원서기보] → 채권자취소권과는 달리 채권자대위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하여야 한다(법 제404조 제2항). → 321쪽 행사방법 1.
ㄴ. (O) 책임재산의 보전과 관계없이 특정물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X). [2019년 법원사무관, 2013년 법원행시, 2018년 법원주사보, 1990、1994년 법원서기보] →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대위, 특정채권, 무자력X]** → 323쪽 2.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O). [2013년 법원행시, 2010・2019년 법원주사보] → 피보전채권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보전이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21쪽 피보전채권 3.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O). [1999년 법무사, 2013년 법원행시, 2008、2013년 법원주사보] → 332쪽 2.
ㄷ. (X) 채권자취소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X). [1999년 법무사, 2008년 법원주사보, 2011년 법원서기보]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법 제407조). 그러므로 일반재산의 감소가 아닌 이중매매 등 특정의 채권침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 332쪽 3.
ㄹ. (X)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청구를 기각한다(X). [2009년 법무사, 2016년 법원사무관, 2018년 법원행시, 2018년 법원주사보, 2014년 법원서기보] → '기각'이 아니라 각하이다. 즉,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한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25151 판결).**[대위, 피보전권리X, 각하O]** → 322쪽 1.

22(23).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다.

정답 ④(난이도 하)

① (O)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O). [2013년 법무사, 2005년 법원사무관, 2014년 법원행시, 2007년 법원주사보, 2007(하)년 법원서기보]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예정, 채권자 증명, 채무불이행만O]** → 316쪽 3.
② (O)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2016년 법무사, 2016년 법원사무관, 2017년 법원행시, 2015년 법원주사보, 2014년 법원서기보]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예정, 채무자 증명, 귀책사유 없음O]** → 316쪽 5.
③ (O)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당시의 사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X). [2016년 법무사, 2005년 법원사무관, 2012、2018년 법원행시, 2007년 법원주사보]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01.15. 선고 92다36212 판결).**[예정과다 판단시기, 사실심변종시O]** → 316쪽 8.
④ (X)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다(X). [2010년 법무사, 2002년 법원사무관, 2005、2012년 법원행시, 2007년 법원주사보] →

민법 제398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규정한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한편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제도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에 간섭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따라서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다.**[예정 감액 무효, 처음부터O]** → 317쪽 14.

23(24). 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②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④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고,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정답 ③(난이도 하)

① (O)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설령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그 사무처리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인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X). [2018년 법원사무관, 2015년 법원행시] →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u>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u>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국가 사무, 사인 개입 정당화, 사무관리O]** → 511쪽 9.
② (O)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라 하더라도 과실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X). [2016년 법무사, 2018년 법원행시] → 제735조(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u>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u>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509쪽 7.
③ (X)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O). [2016년 법무사, 2014년 법원사무관, 2015、2018년 법원행시, 2019년 법원서기보]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약정에 따른 사무처리, 사무관리X]** → 510쪽 6.

④ (O)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①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②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③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O). [2018년 법원행시]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사무처리의사, 병존O, 표시X, 확정X]** → 510쪽 3.

24(21).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및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계약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한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 등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반면,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라면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④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대항력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임차목적물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이미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 결정에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지 신소유자가 이를 상환할 의무는 없다.

정답 ④(난이도 중)

① (O)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임차목적물반환의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배의무, 동시이행X]** → 미기출 판례. 429쪽 7.

② (O)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52933 판결 [1]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부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3면 계약 체결 또는 채권양도통지・승낙) **[계약인수, 보증금채권 양도, 확정일자O]** [2]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계약 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오로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위 행위가 기존의 임대차계약 관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제3자의 새로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인지는, 위 행위를 이루고 있는 계약 내지 의사의 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위 행위에 담긴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그 법률관계의 성격 내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계약인수・기존보증금채권 양도・새로운 보증금채권발생, 계약 해석의 문제O]** → 미기출판례. / 홍민법 신정판 887쪽 11. 채권의 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X). [2018년 법원행시] →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 참조). 그런데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참조),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압류된 채권, 계약인수, 제3채무자 대항X]** → 376쪽 3.
③ (O) 임차인이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 비록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X). [2012년 법무사, 2002년 법원사무관, 2001년 법원행시, 2010년 법원서기보]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채권 우선회수 목적, 소액임차인 보호X]** → 486쪽 2. /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O). [2009、2012년 법무사, 2015년 법원행시] →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보증금 감액, 소액임차인O]** → 487쪽 6.
④ (X)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X). [2010년 법무사, 2016년 법원행시] →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대법원 1990.01.23. 선고 88다카7245 판결).**[채무불이행 해지, 부속물매수X]** → 470쪽 1. / 매매목적부동산을 사용하여온 임차인이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니 매수인이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이를 상환하였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명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2425,32432(반소) 판결).**[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 양수인에게X]** → 미기출판례.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서 건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한 임대차계약상의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매각허가결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그와 별도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O). [2010년 법원행시, 2018년 법원서기보]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임차인의 유익비 지출, 626조②O, 203조②X]** → 453쪽 3. ② → 185쪽 16.

25(25). 다음은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
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
ㄹ.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
ㅁ. 취소권은 (㉤)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	㉢	㉣	㉤
①	무효로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취소원인을 안 날
②	무효로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로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는 날
③	무효로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로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원인을 안 날
④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로 한다	추인할 수 있는 날

정답 ②(난이도 하)

ㄱ. (O)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O). [2003년 법무사, 2018년 법원사무관, 2014、2018년 법원주사보, 2013년 법원서기보] → 민법 제107조 제1항. → 58쪽 기본 1.
ㄴ. (O)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O). [2013년 법원사무관, 2012년 법원행시, 2011、2014년 법원주사보, 2007(하)년 법원서기보] → 민법 제109조 제1항. 64쪽 1.
ㄷ. (O)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 [2018년 법원주사보] → 민법 제108조. → 60쪽 기본 1.
ㄹ. (O)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 [2016년 법무사, 2005년 법원사무관, 2007년 법원행시, 2010、2011년 법원주사보] → 민법 제110조 제2항. 70쪽 기본 1.
ㅁ.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X). [2018년 법무사, 2010년 법원사무관, 2005년 법원행시, 2016년 법원주사보, 1994년 법원서기보] → 취소권은 <u>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u>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법 제146조). → 99쪽 17.